

개정공탁예규 내용 추가

-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-

금년에는 공탁예규나 선례변경이 종전보다 많은 편이라서 이 곳 1차 자료실에 올렸는데, 아래 내용이 일부 누락되었기에 이를 추가로 올려드립니다, 혹시 모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* 우선 2024. 4. 11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

1. 개정이유

- 국고귀속 되는 공탁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공탁금 출급·회수권자에 대한 안내방법을 우편 발송과 전자적 발송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
- 전자적 안내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전자적으로 공탁금 출급·회수청구를 안내하는 방법, 안내 대상 및 안내 절차를 규정함(제3조, 제7조 및 제8조 신설)
- 우편안내 제외 대상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,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재발송하지 않도록 함(제4조, 제6조)

▶ 개정전 제3조 (안내 방법)

- ① 안내는 공탁금 출급·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(이하 "안내문"이라 한다)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②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하되,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.

▶ 개정 후 제3조 (안내방법)

공탁금 출급·회수청구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1. 우편발송
2. 애플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(이하 "전자적 안내"라 한다)

▶ 제4조 (우편안내 대상)

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, 4년,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▶ 종전 제6조 ③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는 폐기한다. 다만, 반송사유가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일 경우에는 안내문을 다시 발송할 수 있다..... 삭제

▶ 제7조 (전자적 안내 대상)

①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부터 만 8년 전까지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제4조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.

▶ 제8조 (전자적 안내 절차)

① 제7조 각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.

② 제1항의 대상사건 중 잔액이 1,000만 원 이상이고,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행정자치부 등 주민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제1항의 절차를 진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회신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안내를 한다.

1.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성명
2. 관할 공탁소·공탁종류·공탁사건번호
3. 공탁금액(잔액)
4. 제4조 각 호 공탁유형별 공탁금 출급·회수청구 절차
5. 그 밖에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* 그 후 최근 2024. 8.6. 가정이 있었으며,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

1. 개정이유

○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상호가 주식회사 아이엠뱅크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, 별지 안내문 양식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정확한 민원안내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각 별지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(별지 1부터 별지 5까지)

*** 그리고 2024. 4. 11 개정시에... 종전예규 4조 2항...제1항의 경우 공탁금 출급·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삭제되었습니다. 개정이유에서도 이 부분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.

*** 그러다 보니... 이제는 제한 사유가 있으면 발송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만일 그랬다면, 오히려 제한 사유가 있으면 발송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. 어찌면... 공탁금 출급·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...는 내용 자체가굳이 당연한 것을 이런 내용형식으로 예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삭제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. 공식적으로 정확한 것은 내년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, 지금 상황에서는 위와같은 상황만 알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*** 참고로 우편안내 제외 대상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,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재발송하지 않도록 함(제4조, 제6조)..부분은 오히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도 1차 자료실에 추가로 올리고, 수험생들에게 문자로 알라도록 하겠습니다.